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3030

제출연월일 : 2024. 8. 21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"을 "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"으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"부양의무자"를 각각 "가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12조의5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양의무자"를 "가구워"으로 한다.

제84조 전단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"으로 한다.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생계급여·의료급여"를 "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12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생 제12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 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-----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12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---제12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(제 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 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에 대 ----- 가구워---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 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

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<u>부</u>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가</u>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 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12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 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<u>가</u>
구원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가구원이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<u>가구원이</u>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 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는 보 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 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 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금 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③ ~ ⑦ (생 략)

②
<u>가구원</u>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양로지원) 5·18민주유공	제84조(양로지원)
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	
다)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	
는 60세 이상의 여성(5・18민주	
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	
상,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)	
중 <u>부양의무자가 없는</u> 자(부양	<u>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</u>
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	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
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	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
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의	느
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이 경우 5·18민주유공자의 배	
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	
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	
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	
있다.	
제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	제95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	①
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	
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	
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	
에 관한 자료, 국세ㆍ지방세에	
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	
자료,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등	
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	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에 관	생계급여・주거급여・의료급여

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~ 13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• 교육급여
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	종전에는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
		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
1	안 제12조의3 (교육지원 신청)	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
1		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
		활이 어려운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
		강화하려는 것임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3	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
1	(교육지원 신청)	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교육지원을 위해 최근 5년 간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한 대상자는 97명이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비해당자는 27명이나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1명 으로, 전체 신청자의 1%에 불과해 추가 예산 소요는 미미함
- 이에 따라, 법률 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폐지 시 기존 탈락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지원받지 못한 1명에 대한 추계를 작성함
 - 향후 5년간 연평균 2.5백만원 추가 예산 소요

Ⅲ. 부대의견

- 최근 5년 생활수준조사 결과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소수임
- O 다만, 동 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완화된 조사기준이 시행되면 신청인원 및 수혜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・국장
김미정	김진숙	윤석진	최병완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진숙	044-202-5658	jinsk1204@korea.kr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